42. 용접공에서 발생한 파킨슨병

| 성별 남성 | 나이 | 만 47세 | 직종 | 용접공 | 직업관련성 | 낮음 |
|--------------|----|-------|----|-----|-------|----|
|--------------|----|-------|----|-----|-------|----|

1 개 요

근로자 ○○○은 □사업장에서 1984년부터 2018년까지 근무하였고, 약 23년 6개월을 용접 업무에 종사해왔다. 2005년경부터 보행장애 증상 있었으며, 이후 서서히 좌측 족부 진전 및 좌측 서동증 악화되어 2010년 7월 대학병원에서 정밀검사를 통해 파킨슨병으로 진단받았다. 근로자는 용접공으로 근무하면서 망간 및 중금속에 고농도로 노출되었으며, 도장공과 같은 공간에서 함께 근무하며 도료 및 유기용제에 고농도로 노출되어 파킨슨병이 발생하였다고 생각하여 2021년 3월 16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업무관련성 평가를 위한 역학조사를 의뢰하였다.

2 작업환경

근로자 ○○○은 1984년 2월 입사하여 1998-2000년도 이전에는 선장부 용접사로 근무하였으며, 1998-2000년경 선행의장으로 부서 이동하여 2007년 9월까지 의장작업을 담당하였다. 이후에는 선행의장부에서 자재관리를 담당하였으며 해당 기간 동안 용접작업은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18년 4월 파킨슨병의 악화로 희망퇴직 하였다. 총 근무기간 34년 2개월 중 의장작업을 시행한 기간은 약 23년 6개월이며, 이 중 선장부 용접사로 근무한 기간은 약 14년 ~ 16년이다.

3 해부학적 분류

- 신경계 질환

4 유해인자

- 화학적 요인

5 의학적 소견

근로자 ○○○은 □사업장에 근무하던 2005년경부터 좌측 족부 진전 및 보행장애 증상을 호소하였으며, 2007년 A대학병원에서 파킨슨병 의증으로 진단 후 약물치료를 시작하였다고 한다. 이후에도 좌측 족부 진전 및 좌측 서동증, 보행장애 진행하면서 우측에도 같은 증상이시작되어 2010년 7월 B대학병원으로 전원 및 정밀검사 시행, 파킨슨병으로 진단되어 동 병원에서 약물치료 중에 있다. 근로자 면담 시, 2007년경 첫 약물치료 시작하였을 때 증상이명확히 호전되었다고 한다. 현재에도 약물을 복용하지 않으면 구음장애, 보행장애 등의 서동증 증상이 악화되며, 약물을 복용하면 다시 호전된다고 진술하였다. 근로자는 2010년 이전특이질환 없었으며, 현재는 금연 중이나 1991년까지 흡연기간 약 10년, 하루 평균 반 갑의흡연력이 있으며, 발병 이전 주 1회 음주하였으며, 1회 음주량은 소주 반 병 정도였고, 2007년경 약물치료를 시작하면서부터 금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파킨슨병을 비롯한 퇴행성 신경질환 및 신경계통 질환에 대한 가족력은 부인하였다. 1987년 오토바이 사고로 발생한 두부외상으로 혈종제거술을 시행한 바 있으며, 외상 이후 이상증상이나 합병증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약물 복용력이나 중추신경계 감염성 질환, 대사성질환, 신경질환 부인하였으며, 농약취급 및 농업 종사 이력 또한 없었다고 답변하였다.

6 고찰 및 결론

근로자 ○○○(남, 1963년생)은 42세에 증상이 시작되어 만 47세가 되던 2010년 파킨슨병을 진단받았다. 근로자는 1984년 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사업장에서 약 34년 2개월 근로하였다. 이 중 약 23년 6개월 동안 의장작업을 담당하며 용접작업을 시행하였다. 근로자의 상병과 관련 있는 직업적 유해요인으로는 농약(제초제 등), 유기용제(TCE 등), 중금속(망간 등) 노출이 파킨슨증과 관련이 있다는 보고가 있으나, 파킨슨병에 대해서는 농약 외의인자에 대한 근거는 제한적이다. 근로자가 담당한 용접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간헐적으로 용접흄과 용접 흄 내 망간이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입사 초기의 작업환경을 고려하면 고농도에 노출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수 있다. 근로자의임상적 특성은 특발성 파킨슨병으로 보이고 망간노출에 의한 이차성 파킨슨증후군의 가능성이 낮다. 다수의 높은 질적수준을 가진 연구에서 용접작업 및 망간노출과 일차성 파킨슨병 발병과의 관련성을 확인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발병위험을 낮게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끝.